

오토바이 헬멧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51672 (2025.08.14.)
-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중국
- 최종 원산지: 베트남



II 사실관계

용도	• 오토바이 탑승자용 헬멧		
재료		베트남	• 외피
		중국	• 내부 EPS 폼 • 턱끈, 스트랩, 패드 등 기타 헬멧 부품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베트남  헬멧 외피 생산 → Manufacturing ▾  중국  STEP 1 헬멧 외피 수입 STEP 2 트림 및 기타 부품 설치 STEP 3 내부 EPS 폼 부착 STEP 4 최종 조립 및 세척 STEP 5 포장 → Export ▾  중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베트남
		중국	• 외피에 트림 및 부품 설치 • 환기구, 슬라이더 및 압력 플레이트 추가 • 충격 흡수를 위한 EPS 폼을 내부에 장착 • 표면 세척 및 최종 검사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단은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비용을 구성하는 외피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부품은 베트남에서 전적으로 제조됨

-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작업은 베트남산 외피에 기타 부품을 부착하는 것일 뿐, 해당 외피를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

IV 시사점

- ☉ CBP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실질적 변형 판정 시, 외피가 제작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부착되는 내부 패드, 기타 부품은 원산지 판정에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오토바이 헬멧
사례번호	NY N012946 (2007.07.06.)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북한] - 직물을 가공하여 헬멧 내부 패드 생산 • [한국] - 원재료를 성형하여 외피 제작 - 북한산 패드를 헬멧 내부에 부착 - 바이저, 턱끈 등 기타 부품 조립 - 세척 및 포장
판정 결과	• 북한산 패드는 한국산 헬멧 외피 내부에 부착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오토바이 헬멧의 원산지는 한국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